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
----------	------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0일  
발 의 자 : 우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 이종필, 이석주, 남재경,  
김용석(서초), 이승로,  
김희걸, 성중기, 이해경,  
김기대, 서윤기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교량”을 “다리”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그러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교량”을 “다리”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12조제8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으로 한다.

제27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1~2. (생 략) 3. <u>교량</u>,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 에 관한 사항</p>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1~2. (현행과 같음) 3. <u>다리</u>, ----- -----</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 는 위촉할 수 있다. 1. <u>당해</u>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u>당해</u>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u>당해</u>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 한 경험이 있는 자 ②~③ (생 략)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u> <u>에서</u>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 ----- 1. <u>해당</u> ----- 2. <u>해당</u> ----- ----- 3. <u>해당</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대해서는</u>----- <u>범위에서</u> ----- ----- -----</p>
<p>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u>매</u> <u>5년마다</u>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 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p>	<p>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5 <u>년마다</u> ----- ----- -----</p>
<p>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⑦ (생 략)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 자 등에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u> 수 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u>대해서는</u>----- <u>범위에서</u>----- ----- -----</p>
<p>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1~3. (생 략)</p>	<p>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1~3. (현행과 같음)</p>

<p>4. <u>당해</u>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4. <u>해당</u> ----- -----</p>
<p>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u>당해</u>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해당</u> ----- ----- -----</p>
<p>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u>기타</u>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p>	<p>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p>
<p>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생략)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때에는</u>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1~3. (현행과 같음) 4. ----- <u>인정할 때에는</u> ----- ----- ----- -----</p>
<p>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u>대하여는</u>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제27조(수당 등) ----- ----- ----- <u>대해서는</u> ----- ----- ----- <u>제외한다.</u></p>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우 미 경